

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안전한 보존·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

○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·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
○ 민간기록물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. 법률 제16661호로 일부개정 및 시행(2020. 6. 4.)되며 신설된 제46조의2(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)¹⁾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, 해당 법조문은 민간기록물 수집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따라서 이번 제정조례안은 개인 등이 소유 또는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의 대상,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.
- 이번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**안 제4조**는 도지사로서 하여금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

1) **제46조의2(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)**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,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,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5조는 민간기록물을 기증 받는 방법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받는 종전 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관리하도록 하며, 기증 외 위탁, 구입,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함.
 - 안 제6조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며,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.
 - 안 제7조는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,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‘민간기록물조사위원회’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조사위원회에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 -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민간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, 보존,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‘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’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위와 같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,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, 조사 및 수집 등을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민간기록물에 관한

기본계획 및 민간기록물 수집, 보존,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.

○ 개인이나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·보존함으로써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과 정체성이 담긴 기록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이번 제정조례안의 시행 의의가 있음. 또한, 공공기록물의 생산·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·보존 시스템이 취약한 민간기록물을 위한 독자적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, 이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방대한 민간기록물 중 수집과 보존 등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, 기록물을 구입해 수집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산정을 할 것인지 등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. 또한, 향후 도민들이 민간기록물을 지역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기록물 기증과 위탁 등 수집에 관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붙임 :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. 끝.